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9

발의연월일 : 2026. 10. 29.
발 의 자 : 안종숙 의원(1명)
찬 성 자 : 신정태·김해바른·하서영·박성준·김안숙·정순용·오지환·이은경 의원(총 8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지원 상한액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신청 서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금 지급기한과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설정(안 제3조)

다. 지원금 지급기한 변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최대 100만 원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을 “제1항”으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않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신생아”를 “산모·신생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table>
<tr><td>산모 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 rowspan="2">연락처</td><td>집)</td></tr>
<tr><td>출 산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d>휴대전화)</td></tr>
<tr><td>서비스 제공기관명</td><td colspan="5"></td></tr>
<tr><td>이 용 기 간</td><td colspan="5">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입금계좌</td><td>예금주
(산모명)</td><td></td><td>은행명</td><td></td><td>계좌
번호</td><td></td></tr>
<tr><td rowspan="2">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td><td colspan="6">※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td></tr>
<tr><td colspan="2">유의사항
확인여부</td><td>☐ 예
☐ 아니오</td><td colspan="2">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td><td>(서명)</td></tr>
</table>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table>
<tr><td>첨부서류</td><td>※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표 등본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산모의 통장 사본 1부
③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업체 직인 포함) 1부
④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1부
⑤ 출생아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⑥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타구 거주 산모 추가서류(남편이 지원대상에 부합할 경우)
⑦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1부
⑧ 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td></tr>
<tr><td>안내사항</td><td>※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서초구 거주 중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타구 전출 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지급기한 :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지급
※ 산모의 주소지가 서초구인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 내역 일치 여부 및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 확인 후 지급</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담당자
확인사항</td><td>지원결정액</td><td>원</td></tr>
<tr><td>신청결정유형</td><td></td></tr>
</table>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표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구보건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자 요건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구보건소)
■ 공동이용의 목적
◦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인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조회・열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포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별표 1의 2 ---------- ---------- ---------- ---------- ---------- -------.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 ---------- ---------- 최대 100만 원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 ----------. ------ ----------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 ---------- ----------.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산모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 ----------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신 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 제1항---------- ---------- ---------- -- 60일 ---------- ----------.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지원 중단) ① ---------- ---------- ---------- ----- 않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대장 관리) ------ 산모·신생아---------- ---------- ----------.

[붙임1]

관 계 법 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 2. (생 략)

3. 인력기준

가. (생 략)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생 략)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

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다. (생 략)

4. ~ 6. (생 략)

□ 「전자정부법」 [시행 2026. 8. 28.]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 ③ (생 략)

[붙임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2027년부터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관련 정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설정
- 지원 신청 제출서류(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명시, 지원금 지급기한 변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근거 신설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1	제1조(목적) 재2조(정의)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 목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포함)으로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O	**〔직접적 재정소요(절감) 요인〕** 서초구에 365일 이상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의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는 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 및 기존 방식 대비 재정절감이 발생함
3	제4조(지원 신청)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별지 제1호·제2호서식) 명시, 지원금 지급기한 변경(30일 → 60일)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근거를 규정한 행정 절차적 조항으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제5조(지원 중단) 제6조(대장 관리)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지원 중단·환수 및 지원 현황 대장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 자구 및 위임 문구를 정비하는 조항이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5	부칙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의 시행일(공포한 날) 및 지원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을 규정한 부칙 조항으로 그 자체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세출요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365일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자
- **(지원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단,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함
- **(지원자 수)** · 2026년 예상 지원자 수: 1,588명
 · 2027~2028년: 연 +150명, 2029년 이후: 연 +100명

 * 산정 근거: 출생아 수 추이 및 최근 3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환급)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되, 2029년 이후 증가 폭은 보수적으로 둔화 가정.

- **(1인당 평균 지원금액): 922,290원**

 * 산정 기준: 2026년 1~8월(누계) 본인부담금 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 기준(90% 지원 + 100만원 상한 적용)으로 환산하여 재산정한 금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본인부담금 지원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소계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 총 비용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합계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5.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 해당 안은 출생아 수, 서비스 이용률,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재정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액 활용유의**〕

- 향후 소관부서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작성자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55-80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본인부담금 지원(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상한)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총 9,121,450천원 (‘27년~‘31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본인부담금 지원 등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 산출내역

1)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지원 대상자 수(명)	1,588	1,738	1,888	1,988	2,088	2,188
전년 대비 증가수		+150	+150	+100	+100	+100

- 산정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출생아 수 추이 및 최근 3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환급) 증가 추세 반영

- (출생아 수 참고) 2023년 1,797명 → 2024년 1,912명 → 2025년 2,031명 → 2026년 8월(연중 누계) 1,598명

※ 출생아 수 및 이용률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 1인당 평균 지원금 및 연도별 소요 예산 산정

- 1인당 평균 지원 비용 : **922,290원**
- 소요예산(원) : 지원 대상자수× 922,290원

① 2027년 소요예산 = 1,602,940,020원
= 1,738 명 × 922,290원

② 2028년 소요예산 = 1,741,283,520원
= 1,888 명 × 922,290원

③ 2029년 소요예산 = 1,833,512,520원
= 1,988 명 × 922,290원

④ 2030년 소요예산 = 1,925,741,520원
= 2,088 명 × 922,290원

⑤ 2031년 소요예산 = 2,017,970,520원
= 2,188 명 × 922,290원

3) 비용절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존 방식 지원	1,907,246	2,071,853	2,181,591	2,291,329	2,401,067	10,853,086
100만원 상한	1,602,940	1,741,284	1,833,513	1,925,742	2,017,971	9,121,450
절감액	304,306	330,569	348,078	365,587	383,096	1,731,636

- 1인당 평균 지원 비용 : **기존방식 1,097,380원** → 100만원 상한 시 : 922,290원
- **100만원 상한 지원으로 5년동안 1,731,636천원 절감 예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안종숙		신정태	신정태
		김해바른	
		화서영	
		김성준	
		김한슬	
		정동용	
		오지환	
		이은경	이은경